|  |  |  |
| --- | --- | --- |
| **돌발(突發)환경사건 조사·처리방법**  환경보호부 령 제32호  <돌발환경사건 조사·처리방법>이 2014년 12월 15일 환경보호부 부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저우성시옌(周生賢)  2014년 12월 19일  **제1조** 돌발환경사건 조사·처리 돌업무를 규율하기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건 대응법> 등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돌발환경사건의 원인, 성격, 책임에 대한 조사·처리는 이 방법을 적용받는다.  핵과 방사능 돌발사건의 조사·처리는 핵과 방사능 안전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집행한다.  **제3조** 돌발환경사건 조사는 실사구시, 객관공정, 권책일치(權責一致)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적시에 명확하게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고 사건의 책임을 확정하며 사건의 교훈을 총결짓고 방비 및 점검·시정조치 건의사항과 처리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제4조** 환경보호부는 중대한 돌발환경사건과 특별히 중대한 돌발환경사건의 조사·처리를 책임지고; 성급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규모가 비교적 큰 돌발환경사건의 조사·처리를 책임지며; 사건 발생지역의 시(市)급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상황에 따라 일반 돌발환경사건의 조사·처리를 책임진다.  상급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상황에 따라 돌발환경사건의 조사·처리 업무를 하급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하급 환경보호 주관부서 관할인 돌발환경사건을 직접 조사·처리할 수도 있다. 하급 환경보호 주관부서 관할인 돌발환경사건을 직접 조사·처리하는 경우 적시에 하급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하급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그의 관할인 돌발환경사건을 직상급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조사·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상급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직상급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돌발환경사건 조사 시 조사팀을 구성해야 한다. 환경보호 주관부서의 주요 책임자 또는 환경 응급 관리업무를 주관하는 책임자를 팀장으로 하고 응급 관리, 환경 모니터링, 환경영향평가 관리, 환경 감찰 등 관련기구의 관련인력을 팀원으로 구성한다.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환경 응급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가와 기타 전문기술인력을 초빙하여 조사에 협조하도록 할 수 있다.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돌발환경사건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공안, 교통운수, 수리(水利), 농업, 위생, 안전감독·관리, 임업(林業), 지진(地震) 등 관련 부서 또는 기구를 요청하여 조사업무에 참여시킬 수 있다.  조사팀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여러개의 업무소조로 나누어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업무소조의 책임자는 조사팀 팀장이 지정한다.  **제6조** 조사팀 팀원과 조사팀이 조사협조의 목적으로 초빙한 자는 조사 대상 돌발환경사건과 이해관계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조사팀 팀원과 조사팀이 조사협조의 목적으로 초빙한 자는 업무기율을 준수하고 객관·공정하게 돌발환경사건을 조사·처리하며 조사·처리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조사팀 팀장의 동의 없이 돌발환경사건 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무단 발표해서는 아니된다.  **제7조** 돌발환경사건 조사 수행 시 조사방안을 작성하여 직책과 업무분장, 방법과 절차, 업무일정 등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8조** 돌발환경사건 조사 수행 시 돌발환경사건 현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샘플링·모니터링, 사진촬영, 영상촬영, 현장조사기록 작성 등 방법으로 현장의 상황을 기록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한다.  (2) 돌발환경사건 발생업체, 돌발환경사건에 연루된 관련업체 또는 업무현장에 진입하여 관련 서류, 자료, 데이터, 기록 등을 확보하고 복사한다.  (3) 조사 수요에 근거하여 돌발환경사건 발생업체의 관계자, 응급처리 업무에 참여한 사건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자에 대해 신문을 실시하고 신문기록을 작성한다.  현장조사, 검사 또는 신문은 최소 2명의 담당자가 수행해야 한다.  돌발환경사건 발생업체의 책임자와 관계자는 조사기간 법에 따라 조사업무에 협조해야 하고 조사팀의 신문에 응해야 하며 관련 서류, 자료, 데이터, 기록 등을 성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객관적 사유로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복사본, 복제품 또는 해당 원본, 원품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영상 또는 기타 증거를 제공해야 하며 관계자가 서명확인 한다.  현장조사기록, 검사기록, 신문기록 등은 조사원, 조사현장의 관계자, 피신문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돌발환경사건 조사 시 사건 조사기록 파일을 제작하고 돌발환경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보관한다.  **제9조** 돌발환경사건 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상황을 규명해야 한다  (1) 돌발환경사건 발생업체의 기본정보;  (2) 돌발환경사건의 발생시간, 장소, 원인과 사건경과;  (3) 돌발환경사건으로 인한 부상·사망 상황, 직접적인 경제손실, 환경오염 및 생태환경 파괴 상황;  (4) 돌발환경사건 발생업체, 지방 인민정부와 관련부서의 일상 감독·관리 상황 및 사건 대처 상황;  (5) 규명이 필요한 기타 사항.  **제10조**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소재지 인민정부의 요구에 따라 돌발환경사건 응급처리 단계의 오염손실 평가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응급처리 단계 오염손실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응급처리 단계 오염손실 평가 보고서 또는 결론은 돌발환경사건 조사보고서 작성 시의 중요한 근거이다.  **제11조** 돌발환경사건 조사 시 돌발환경사건 발생업체의 다음 각 호의 상황을 규명해야 한다.  (1) 환경 응급 관리제도 구축 상황 및 책임자 직책의 명확성;  (2) 환경 리스크 방비시설 구축 및 운영 상황;  (3) 환경안전 잠재 리스크 정기점검 상황 및 환경 리스크 방비·대응조치의 적시 취급 상황  (4) 환경 응급 대비방안의 작성, 비안(備案), 관리 및 실시 상황;  (5) 돌발환경사건 발생 후의 사건정보 보고 또는 통보 상황;  (6) 돌발환경사건 발생 후의 응급 대비방안 가동 상황과 오염원 통제·차단 조치와 오염 확산 방지조치 취급 상황;  (7) 돌발환경사건 발생 후 응급 지도부의 통일지휘에 대한 복종 상황과 요구에 따른 예방·처리조치 취급 상황;  (8) 생산안전사고, 교통사고, 자연재해 등 기타 돌발사건 발생 후의 2차 돌발환경사건 예방조치 취급 상황;  (9) 돌발환경사건 발생 후의 사건현장 조작, 의도적인 파괴행위 또는 조사방해를 위한 증거소각 행위.  **제12조** 돌발환경사건 조사 시 해당 환경보호 주관부서의 환경 응급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상황을 규명해야 한다.  (1) 규정에 따른 환경 응급 대비방안 작성 및 대비방안에 대한 평가·비안(備案)·연습 등 상황과 돌발환경사건 발생업체의 환경 응급 대비방안에 대한 규정에 따른 비안(備案)관리 실시 상황.  (2) 규정에 따른 현장 출두 및 적시 보고 상황;  (3) 규정에 따른 환경 응급 모니터링 실시 상황;  (4) 직책에 따른 통일지도직책 수행 인민정부에 돌발환경사건 처리건의 또는 정보발표 건의 제시 상황;  (5) 인근 행정구역이 돌발환경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연루될 가능성 있는 경우 사건 발생지역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인근 행정구역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통보한 상황;  (6) 인근지역 환경보호 주관부서로부터 사건정보를 통보받은 후 관련 환경보호 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조사·파악, 보고한 상황;  (7) 규정에 따른 돌발환경사건 오염손실 평가 진행 상황.  **제13조** 돌발환경사건 조사 시 돌발환경사건 발생업체의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입항(立項), 심사비준, 검수, 집법 등 일상 감독·관리 과정과 돌발환경사건 대응 및 돌발환경사건 오염손실 평가 등 단계에서 지방 인민정부와 관련부서의 직책 이행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제14** 돌발환경사건 조사 시 돌발환경사건의 기본상황을 명확하게 조사 한 후 돌발환경사건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5조** 돌발환경사건 조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발환경사건 발생업체의 기본상황과 돌발환경사건 발생경과;  (2) 돌발환경사건으로 인한 부상·사망 상황, 직접적인 경제손실, 환경오염과 생태파괴 상황;  (3) 돌발환경사건의 원인과 성격;  (4) 돌발환경사건 발생업체의 환경 리스크 방비 상황, 잠재적 리스크 점검·시정 및 응급처리 상황;  (5) 지방정부와 관련부서의 일상 감독·관리 상황 및 응급처리 상황;  (6) 귀책판정 및 돌발환경사건 발생업체, 책임자 처리에 관한 건의;  (7) 돌발환경사건 방비조치 및 점검·시정조치에 관한 건의;  (8) 보고할 필요가 있는 기타 내용.  **제16조** 특별히 중대한 돌발환경사건, 중대한 돌발환경사건의 조사기한은 60일이고; 비교적 큰 돌발환경사건과 일반 돌발환경사건의 조사기한은 30일이다. 돌발환경사건 오염손실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은 조사기한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조사팀은 전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조사업무를 완성하고 동급 인민정부 및 직상급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사기한은 돌발환경사건의 응급 상태가 종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7조**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돌발환경사건 조사결론, 환경영향 및 손실 평가결과 등 정보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18조** 돌발환경사건 조사 과정에서 돌발환경사건 발생업체의 환경법 위반행위가 발각된 경우 조사팀은 적시에 해당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처벌 건의를 제시해야 한다.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사건발생업체 및 책임이 있는 자에게 행정처벌을 내려야 하며;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사법기관으로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기타 위법행위가 발각된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적시에 관련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국가정정기관 및 업무요원, 돌발환경사건 발생업체 중 국가행정기관이 임정한 자가 법과 규율을 위반한 경우, 환경보호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지체 없이 감찰기관 또는 유관부서에 처분 건의를 제기해야 한다.  **제19조** 발환경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지역 또는 돌발환경사건으로 심각한 후과가 초래된 지역의 해당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하급 지방인민정부 주요 지도자와의 면담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돌발환경사건 발생업체의 환경법 위반정보를 사회신용기록 파일에 기록하고 적시에 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제21조**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조사보고서에 근거하여 하급 인민정부, 하급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돌발사건 조사보고서에서 제시한 관련 방비조치와 점검·시정조치 건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독촉장을 발송할 수 있으며 독촉장에는 책임업체 및 업무과제와 완성기한을 명기한다.  독촉장을 받은 해당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규정된 기한내에 사건 방비조치 및 점검·시정조치 건의사항 이행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22조** 이 방법은 환경보호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3조** 이 방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突发环境事件调查处理办法**  环境保护部令第32号  《突发环境事件调查处理办法》已于2014年12月15日由环境保护部部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5年3月1日起施行。  部长 周生贤  　　2014年12月19日  **第一条** 为规范突发环境事件调查处理工作，依照《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中华人民共和国突发事件应对法》等法律法规，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适用于对突发环境事件的原因、性质、责任的调查处理。  　　核与辐射突发事件的调查处理，依照核与辐射安全有关法律法规执行。  **第三条** 突发环境事件调查应当遵循实事求是、客观公正、权责一致的原则，及时、准确查明事件原因，确认事件性质，认定事件责任，总结事件教训，提出防范和整改措施建议以及处理意见。  **第四条** 环境保护部负责组织重大和特别重大突发环境事件的调查处理；省级环境保护主管部门负责组织较大突发环境事件的调查处理；事发地设区的市级环境保护主管部门视情况组织一般突发环境事件的调查处理。  　　上级环境保护主管部门可以视情况委托下级环境保护主管部门开展突发环境事件调查处理，也可以对由下级环境保护主管部门负责的突发环境事件直接组织调查处理，并及时通知下级环境保护主管部门。  　　下级环境保护主管部门对其负责的突发环境事件，认为需要由上一级环境保护主管部门调查处理的，可以报请上一级环境保护主管部门决定。  **第五条** 突发环境事件调查应当成立调查组，由环境保护主管部门主要负责人或者主管环境应急管理工作的负责人担任组长，应急管理、环境监测、环境影响评价管理、环境监察等相关机构的有关人员参加。  　　环境保护主管部门可以聘请环境应急专家库内专家和其他专业技术人员协助调查。  　　环境保护主管部门可以根据突发环境事件的实际情况邀请公安、交通运输、水利、农业、卫生、安全监管、林业、地震等有关部门或者机构参加调查工作。  　　调查组可以根据实际情况分为若干工作小组开展调查工作。工作小组负责人由调查组组长确定。  **第六条** 调查组成员和受聘请协助调查的人员不得与被调查的突发环境事件有利害关系。  　　调查组成员和受聘请协助调查的人员应当遵守工作纪律，客观公正地调查处理突发环境事件，并在调查处理过程中恪尽职守，保守秘密。未经调查组组长同意，不得擅自发布突发环境事件调查的相关信息。  **第七条** 开展突发环境事件调查，应当制定调查方案，明确职责分工、方法步骤、时间安排等内容。  **第八条** 开展突发环境事件调查，应当对突发环境事件现场进行勘查，并可以采取以下措施：  　　（一）通过取样监测、拍照、录像、制作现场勘查笔录等方法记录现场情况，提取相关证据材料；  　　（二）进入突发环境事件发生单位、突发环境事件涉及的相关单位或者工作场所，调取和复制相关文件、资料、数据、记录等；  　　（三）根据调查需要，对突发环境事件发生单位有关人员、参与应急处置工作的知情人员进行询问，并制作询问笔录。  　　进行现场勘查、检查或者询问，不得少于两人。  　　突发环境事件发生单位的负责人和有关人员在调查期间应当依法配合调查工作，接受调查组的询问，并如实提供相关文件、资料、数据、记录等。因客观原因确实无法提供的，可以提供相关复印件、复制品或者证明该原件、原物的照片、录像等其他证据，并由有关人员签字确认。  　　现场勘查笔录、检查笔录、询问笔录等，应当由调查人员、勘查现场有关人员、被询问人员签名。  　　开展突发环境事件调查，应当制作调查案卷，并由组织突发环境事件调查的环境保护主管部门归档保存。  **第九条** 突发环境事件调查应当查明下列情况：  　　（一）突发环境事件发生单位基本情况；  　　（二）突发环境事件发生的时间、地点、原因和事件经过；  　　（三）突发环境事件造成的人身伤亡、直接经济损失情况，环境污染和生态破坏情况；  　　（四）突发环境事件发生单位、地方人民政府和有关部门日常监管和事件应对情况；  　　（五）其他需要查明的事项。  **第十条** 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按照所在地人民政府的要求，根据突发环境事件应急处置阶段污染损害评估工作的有关规定，开展应急处置阶段污染损害评估。  　　应急处置阶段污染损害评估报告或者结论是编写突发环境事件调查报告的重要依据。  **第十一条** 开展突发环境事件调查，应当查明突发环境事件发生单位的下列情况：  　　（一）建立环境应急管理制度、明确责任人和职责的情况；  　　（二）环境风险防范设施建设及运行的情况；  　　（三）定期排查环境安全隐患并及时落实环境风险防控措施的情况；  　　（四）环境应急预案的编制、备案、管理及实施情况；  　　（五）突发环境事件发生后的信息报告或者通报情况；  　　（六）突发环境事件发生后，启动环境应急预案，并采取控制或者切断污染源防止污染扩散的情况；  　　（七）突发环境事件发生后，服从应急指挥机构统一指挥，并按要求采取预防、处置措施的情况；  　　（八）生产安全事故、交通事故、自然灾害等其他突发事件发生后，采取预防次生突发环境事件措施的情况；  　　（九）突发环境事件发生后，是否存在伪造、故意破坏事发现场，或者销毁证据阻碍调查的情况。  **第十二条** 开展突发环境事件调查，应当查明有关环境保护主管部门环境应急管理方面的下列情况：  　　（一）按规定编制环境应急预案和对预案进行评估、备案、演练等的情况，以及按规定对突发环境事件发生单位环境应急预案实施备案管理的情况；  　　（二）按规定赶赴现场并及时报告的情况；  　　（三）按规定组织开展环境应急监测的情况；  　　（四）按职责向履行统一领导职责的人民政府提出突发环境事件处置或者信息发布建议的情况；  　　（五）突发环境事件已经或者可能涉及相邻行政区域时，事发地环境保护主管部门向相邻行政区域环境保护主管部门的通报情况；  　　（六）接到相邻行政区域突发环境事件信息后，相关环境保护主管部门按规定调查了解并报告的情况；  　　（七）按规定开展突发环境事件污染损害评估的情况。  **第十三条** 开展突发环境事件调查，应当收集地方人民政府和有关部门在突发环境事件发生单位建设项目立项、审批、验收、执法等日常监管过程中和突发环境事件应对、组织开展突发环境事件污染损害评估等环节履职情况的证据材料。  **第十四条** 开展突发环境事件调查，应当在查明突发环境事件基本情况后，编写突发环境事件调查报告。  **第十五条** 突发环境事件调查报告应当包括下列内容：  　　（一）突发环境事件发生单位的概况和突发环境事件发生经过；  　　（二）突发环境事件造成的人身伤亡、直接经济损失，环境污染和生态破坏的情况；  　　（三）突发环境事件发生的原因和性质；  　　（四）突发环境事件发生单位对环境风险的防范、隐患整改和应急处置情况；  　　（五）地方政府和相关部门日常监管和应急处置情况；  　　（六）责任认定和对突发环境事件发生单位、责任人的处理建议；  　　（七）突发环境事件防范和整改措施建议；  　　（八）其他有必要报告的内容。  **第十六条** 特别重大突发环境事件、重大突发环境事件的调查期限为六十日；较大突发环境事件和一般突发环境事件的调查期限为三十日。突发环境事件污染损害评估所需时间不计入调查期限。  　　调查组应当按照前款规定的期限完成调查工作，并向同级人民政府和上一级环境保护主管部门提交调查报告。  　　调查期限从突发环境事件应急状态终止之日起计算。  **第十七条** 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依法向社会公开突发环境事件的调查结论、环境影响和损失的评估结果等信息。  **第十八条** 突发环境事件调查过程中发现突发环境事件发生单位涉及环境违法行为的，调查组应当及时向相关环境保护主管部门提出处罚建议。相关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依法对事发单位及责任人员予以行政处罚；涉嫌构成犯罪的，依法移送司法机关追究刑事责任。发现其他违法行为的，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及时向有关部门移送。  　　发现国家行政机关及其工作人员、突发环境事件发生单位中由国家行政机关任命的人员涉嫌违法违纪的，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依法及时向监察机关或者有关部门提出处分建议。  **第十九条** 对于连续发生突发环境事件，或者突发环境事件造成严重后果的地区，有关环境保护主管部门可以约谈下级地方人民政府主要领导。  **第二十条** 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将突发环境事件发生单位的环境违法信息记入社会诚信档案，并及时向社会公布。  **第二十一条** 环境保护主管部门可以根据调查报告，对下级人民政府、下级环境保护主管部门下达督促落实突发环境事件调查报告有关防范和整改措施建议的督办通知，并明确责任单位、工作任务和完成时限。  　　接到督办通知的有关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在规定时限内，书面报送事件防范和整改措施建议的落实情况。  **第二十二条** 本办法由环境保护部负责解释。  **第二十三条** 本办法自2015年3月1日起施行。 |